

2025년도 교육위원회
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

주요업무보고



2025. 11.

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

일 반 현 황



일반 현황

연혁

- '87. 12. 09. 「민법」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
- '88. 03. 01. 보상업무 개시
- '06. 03. 01. 소방안전점검사업 개시
- '07. 09. 01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
- '07. 09. 03.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특수법인 설립등기
- '12. 04. 01.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
- '15. 01. 20.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
- '16. 09. 01. 여행자동행공제사업 판매공제 개시
- '20. 05. 13. 교원보호공제사업 개시
- '24. 03. 01. 여행자동행공제사업 보유공제 전환

조직 및 정·현원

- 조직



○ 정·현원

('25. 9. 30. 기준)

- 사무국(특정직 및 일반직 등)

(단위: 명)

구분	특정직	일반직					계
		3급	5급	6급	7급	8~9급	
정원	1	2	4	5	3	15	
현원	1*	2	3	3	6	15	

* 현원 중 특정직(사무국장)은 교육청 파견 고위공무원

* 현원 외 별도정원(5명): 교육청 파견 공무원 2명, 수의사업 계약제직원 3명

- 안전관리실(계약직)

(단위: 명)

구분	실장	과장	팀장·대리	주임	계
정원	1	5	10	8	24
현원	1	5	9	7	22

시설현황

○ 건물 : 730m²

(단위: m²)

구분	지하 1층	3층	6층	합계
공급면적	56	436	238	730

■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

1

예방사업

작성자

예방사업부장: 정병오

☎ 02-6350-5230

담당: 김범준, 황산여울

☎ 02-6350-5234, 5237

□ 추진 배경

- 학교 현장에서 다빈도·중요도·시의성을 반영한 사고 예방 콘텐츠 요구 증대
- 학교 안전사고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필요성 대두

□ 추진 내용

- 다빈도 사고 유형 분석 기반의 맞춤형 예방 콘텐츠 제작
- 신종 위험 요소 및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콘텐츠 지속 제작·배포
- 인포그래픽, 카드뉴스 등 안전사고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정기적으로 제공

□ 향후 계획

- 다빈도 사고 데이터 및 최근 학교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동향 정례적 분석·모니터링 후 콘텐츠 제작
- 교육청과 협업해 콘텐츠를 제작·배포하여 교육 현장 전반에 확산 및 활용 촉진

2

교원보호공제사업

작성자	공제사업부장: 김지안 ☎02-6350-5220	담당: 김천학, 신정화 ☎02-6350-5222, 5221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추진 배경

-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
 -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 - 신속한 분쟁 및 민원 해결로 학생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서울교육 만족도 제고

□ 추진 내용

- 분쟁 예방 및 조정 컨설팅 지원
 - 교육활동 침해행위,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분쟁(민원)이 예견되는 경우,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여 신속·공정하게 분쟁을 조정
 - 전문가 개입으로 교원과 학부모를 분리해 교원은 안정된 교육 활동을 유지하고, 학부모는 전문적 상담을 통한 만족도 제고
-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지원
 - 민·형사상 소송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
 - 피해교원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해소로 교육활동의 실질적 안전망 구축

향후 계획

- 교원보호공제사업 안정적 운영
 - 교원보호공제사업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
 - 교원보호공제사업 전산시스템 구축(17개 시·도 교육청 공동 추진)
-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실효성 증대
 - ①교육활동 침해 예방 → ②교육활동 침해 해결 → ③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피해회복과 직무복귀 지원 → ④기타 업무적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종합지원 체계 구축
 - 보험과 복지를 융합한 새로운 교육활동 보호지원 체계 확립
- 교원보호공제사업 인식 제고
 -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여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홍보 강화
- 학교관리자급 치유회복 역량강화 연수 실시
 - 교육활동 침해 및 특이 민원 발생 등 학교관리자의 심리적·정서적 치유회복을 위한 연수 신설

주 요 업 무

1. 예방사업
2. 보상사업
3. 교원보호공제사업
4. 여행자동행공제사업
5. 소방안전점검사업

주요업무

1

예방사업

작성자

예방사업부장: 정병오

☎6350-5230

담당: 김범준, 황산여울

☎6350-5234, 5237

□ 사업 목적 및 근거

○ 목적

- 피해 복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 변화 환경 반영
- 사고 데이터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콘텐츠를 제공해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저감에 실질적 기여
- 학교급별, 직무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콘텐츠 통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유도

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

□ 추진 실적

○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행사 운영

- 학생 · 학부모가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
- 학부모 대상 안전체험교육 · 소통 프로그램 운영
- 일반직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

○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운영

- 월별 사고 경향을 분석하여 학교급별 안전사고 예보 지속 제공
- 최근 서울 지역 중상해 사례와 전국 주요 사고를 반영하여 위험 요인 종합 분석 및 배포

-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운영
 - 학생 대상 안전 콘텐츠(AI 그림, 솟폼 영상) 공모전 실시(총 243개 작품 접수, 40개 작품 시상)
- 학교안전공제 및 예방 홍보 실시
 - 교육청 학교안전 우수사례 공유회 참여, 공모전 수상작 전시, 예보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
 - 안전사고 예방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방물품 지원(자동 확산 소화기 70교 대상 120개 설치)
- 학교안전컨설팅 실시
 - 효율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및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내 CCTV 설치 환경 진단(20교)

□ 향후 계획

-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
 - 학부모가 자녀 연령대에 맞춰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핵심 정보 중심의 콘텐츠 제작
 - 유괴, 자전거 사고, 스마트폰 과몰입, 사이버 범죄 등 시의성 있는 사고의 예방 방법 안내 예정
-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운영
 -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퀴즈 · 실습 · 체험 패키지 형태의 안전 프로그램 운영
 - 하반기 일반직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실무 역량 강화
-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운영
 - 중요도 · 다빈도 · 시의성 · 계절요인을 반영한 사고 유형별 예방수칙을 카드뉴스 또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제공하는 예보제 지속 운영

- 학교안전사고 조사·연구

-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급별·사고유형별 동향 분석
-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 운영 계획 수립 추진

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5.9.30.기준)

예산 사업명	추진 사업명	'25 예산			'24 최종예산	집행액 및 집행률		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	본예산 (a)	증감 (b)	예산현액 (A=a+b)		원인행위액 (집행률)	지출액 (집행률)	
예방사업	예방사업	198,200	40,860	239,060	189,607	54,090 (22.6)	54,090 (22.6)	
합계		198,200	40,860	239,060	189,607	54,090	54,090	

※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부재(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)

2

보상사업

작성자

공제사업부장: 김지안

☎ 02-6350-5220

담당: 곽란희, 김아현

☎ 02-6350-5205, 5204

□ 사업 목적 및 근거

○ 목적

-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신속·적정한 보상
-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심리치료 지원
-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급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 수행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기여

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□ 추진 실적

(단위: 건, 천원, '25.9.30.기준)

구분	건수	금액	비고
공제급여 지급	요양급여	16,497	6,908,036
	장해급여	11	1,615,288
	유족급여	0	0
	소계	16,508	8,523,324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	상담 및 심리적 치료	3	3,979
학교폭력 피해 지원	심리상담 및 조언	73	84,924
	치료비	15	43,952

□ 향후 계획

-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 기준 개선
 - 학교안전법 개정 사항, 보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소송 판례 등을 반영한 보상기준 지속 개선
- 공제제도 및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 제도 홍보
 - 홈페이지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공제제도 및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, 학교·학부모 만족도 향상 추진
- 학교폭력 피해 지원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로 재정건전성 추구
 - 피해학생 지원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 적극적 행사
 - 구상금 미납 건에 대한 정기적 최고 통보 및 후속 조치(소송 등) 이행

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5.9.30.기준)

예산 사업명	추진 사업명	'25 예산			'24 최종예산	집행액 및 집행률		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	본예산 (a)	증감 (b)	예산현액 (A=a+b)		원인행위액 (집행률)	지출액 (집행률)	
공제급여 지급	공제급여 지급	11,781,200	1,400,000	13,181,200	11,004,778	8,523,324 (64.7%)	8,523,324 (64.7%)	
학교안전 사고피해자 상담지원	학교안전 사고피해자 상담지원	28,690	-	28,690	30,180	4,579 (16.0%)	4,579 (16.0%)	
학교폭력 피해지원	학교폭력 피해지원	416,489	2,640	419,129	525,990	149,303 (35.6%)	149,303 (35.6%)	
합계		12,226,379	1,402,640	13,629,019	11,560,948	8,677,206	8,677,206	

※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부재(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)

※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및 학교폭력피해지원 사업 집행액은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임

3

교원보호공제사업

작성자

공제사업부장: 김지안

☎02-6350-5220

담당: 김천학, 신정화

☎02-6350-5222, 5221

□ 사업 목적 및 근거

○ 목적

-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- 교원 · 학생 · 학부모 등에 대한 신속한 분쟁 및 민원 해결로 교육 활동을 보호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

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2조

□ 추진 실적

(단위: 건, 천원, '25.9.30.기준)

구분	배상책임	분쟁조정	소송비	치료비	위험대처	물품손해	힐링캠프	계
건수	2	33	43	494	4	1	4	581
금액	7,200	16,995	152,556	403,327	6,480	417	39,614	625,589

○ 배상책임

-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,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, 학교관리자 권한에 의한 지휘 · 감독 업무에 따른 사고 및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에 의한/대한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 보상

- **분쟁조정 서비스**
 -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이나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 조정
- **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**
 -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, 상대방이 민·형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 도모
- **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**
 -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 지원
 -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(마음방역),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, 학교장 의견서로 확인된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,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피해가 인정된 교원(마음치유)에 대한 심리상담비 지원
- **위협대처 보호 서비스**
 -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상 위협을 받는 경우, 경호원 출동 보호
- **재산상 피해 비용**
 -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복구비 지원
- **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**
 -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그와 관련 업무로 인해 소진된 교원에게 심리적,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 지원

□ 향후 계획

- **초기대응 플랜 지원 범위 확대**
 -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지원을 학교 대상 행정소송까지 확대
- **교원 심리상담 지원 범위 확대**
 -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여지 사안에 대하여 기존 10회에서 13회로 확대

- 교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범위 확대
 -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
- 힐링캠프 운영 확대
 -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등 힐링캠프 대상 인원 12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

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5.9.30.기준)

예산 사업명	추진 사업명	'25 예산			'24 최종예산	집행액 및 집행률		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	본예산 (a)	증감 (b)	예산현액 (A=a+b)		원인행위액 (집행률)	지출액 (집행률)	
교원보호 공제사업	교원보호공제	1,334,537	-	1,334,537	1,478,797	784,868 (58.8)	784,868 (58.8)	
합계		1,334,537	-	1,334,537	1,478,797	784,868	784,868	

※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부재(자체사업예산)

※ 사업 집행액은 사업비와 인건비,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임

4

여행자동행공제사업

작성자

예방사업부장: 정병오
☎ 02-6350-5230

담당: 김범준, 황산여울
☎ 02-6350-5234, 5237

□ 사업 목적 및 근거

○ 목적

-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회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학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 강화

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

□ 추진 실적

○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상 담보 범위 확대
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담보 신설
-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, 배상책임 등 한도 확대

○ 약관 및 매뉴얼 개정을 통한 운영 체계 확립

○ 수익금의 공제기금 전출(75,000천원)로 기금 건전성 제고

□ 향후 계획

○ 전산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 업무 효율화

-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개발 전국 단위 전산시스템 활용 추진

○ 여행자동행공제 담보 범위 확대 및 약관 개정 지속 추진

-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상 담보 범위 지속 확대

○ 발생 수익의 공제기금 전출 및 재정 건전성 관리

- 수익을 기금에 전출하는 동시에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

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5.9.30.기준)

예산 사업명	추진 사업명	'25 예산			'24 최종예산	집행액 및 집행률		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	본예산 (a)	증감 (b)	예산현액 (A=a+b)		원인행위액 (집행률)	지출액 (집행률)	
여행자 동행공제 사업	여행자 동행공제	716,908	171,933	888,841	592,000	303,740 (34.2)	300,259 (33.8)	
합계		716,908	171,933	888,841	592,000	303,740	300,259	

*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부재(자체사업예산)

5

소방안전점검사업

작성자

예방사업부장: 정병오

☎ 02-6350-5230

담당: 김범준, 장은혜

☎ 02-6350-5234, 5235

□ 사업 목적 및 근거

○ 목적

- 학교시설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 및 각종 위험요소 사전점검
-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

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

□ 추진 실적

○ 점검인력 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

- 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강화로 점검 가능 학교 수 감소(2024년 597교 → 2025년 547교)
- 표준점검비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모니터링으로 사업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

○ 수익금의 공제기금 전출(220,000천원)로 기금 건전성 제고

□ 향후 계획

○ 소방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한 점검 품질 제고

- 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지속 준수

○ 계약 규모 확대를 통한 소방안전점검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

- 적정 인력 확충과 계약학교 수 증대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

○ 발생 수익의 공제기금 전출 및 재정 건전성 관리

- 수익금을 전출하면서도 소방사업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도 모색

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5.9.30.기준)

예산 사업명	추진 사업명	'25 예산			'24 최종예산	집행액 및 집행률		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	본예산 (a)	증감 (b)	예산현액 (A=a+b)		원인행위액 (집행률)	지출액 (집행률)	
소방안전 점검사업	소방안전 점검	3,215,580	470,952	3,686,532	2,933,630	1,299,114 (35.2)	1,296,426 (35.1)	-
합계		3,215,580	470,952	3,686,532	2,933,630	1,299,114	1,296,426	

※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부재(자체사업예산)